

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·운영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0. 12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하여 과학기술인재육성, 시민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탁재산현황
 - 건물명 :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
 - 위치 : 구미시 진평동 704번지 동락공원 내
 - 규모 : 부지 1,630㎡, 연면적 1,600㎡(지하1층, 지상2층)
 - 건립비 : 71.7억원(국비10, 도비5, 시비56.7)
 - 주요시설 : 플라네타리움(천체투영관), 4D영상관, 과학체험관, 다목적 강당 등

3. 운영보조금 : 연 322백만원 정도

- 운영보조금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경비	공공요금및 소모품비	기타 (이윤및부가세)	청소 용역비	비고
322	151	63.5	42	38.5	27	

4. 관련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- 「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

재 산 현 황

구 분			건 물		토 지		비 고
			동 수	연면적(m ²)	필 지	면적(m ²)	
합계			1	1,600	1	1,630	
공 유 재 산	행 정 재 산	공용재산					
		공공용재산	1	1,600	1	1,630	체 험 관
		기업용재산					
		보존용재산					
	일 반 재 산	행정재산외 모든 공유재산					

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위탁시설 현황

구 분	시 설 물 내 역		비 고
건 축 물	지하1층	다목적 강당(126m ² -82석), 전시공간(44.4m ²), 장비·기계·전기실(135.6m ²), 기타(로비 계단134.14 m ²)	
	지상1층	플라네타리움(201.06m ² -100석), 4D영상관(202.5m ² -72석), 사무실(39.75m ²), 영상관리실(8.24m ²), 기타(로비, 화장실-216.66m ²)	
	지상2층	과학체험관(418.32m ² -14개 체험부스), 기타(로비, 화장실-74m ²)	

□ 위치도 및 조감도

위치도



조감도



관 련 법 령

◎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 (관리위탁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◎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-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-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◎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- 제17조(위탁운영)** ①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, 법인,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.
- ② 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.